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가에 규정된 정의가 적용된다.
- 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기구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의하여 개발된 관련 정의가 고려된다.
-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자의 중앙정부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그 당사자의 그러한 당국을 말한다. 그리고
- 라. **긴급조치**란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자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상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관련 수출 당사자에 적용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말한다.

제5.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당사자들 간 무역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적용을 통하여 당사자들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

- 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을 증진하는 것
- 다. 당사자들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투명성 및 이해를 증진하는 것
- 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분야에서 당사자들 간 협력,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 마.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의 개발 및 채택에 당사자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것

제5.3조

적용범위

이 장은 당사자들 간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

제5.4조

일반 규정

각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 서로에 대한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5.5조

동등성

1.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 동등성에 대한 협

력을 강화한다.

2. 수출 당사자의 조치가 수입 당사자의 조치와 동등한 보호 수준을 달성하거나 수출 당사자의 조치가 조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수입 당사자의 조치와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수출 당사자가 수입 당사자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위생 및 식물 위생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한다.

3.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을 결정할 때,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의 규제 역량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지식, 정보 및 경험도 고려한다.

4.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특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동등성에 대한 양자 인정 약정을 달성할 목적으로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양자 인정 약정상 동등성의 인정은 단일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체제 단위에 대한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상, 요청에 따라,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출 당사자에 의하여 수입 당사자에 부여된다.

5. 동등성 인정에 관한 협의의 일부로, 수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자는 다음을 설명하고 제공한다.

가. 자신의 조치에 대한 근거 및 목적, 그리고

나. 자신의 조치가 다루려는 구체적인 위험

6. 수출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가 동등성 평가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평가가 개시되면, 수입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동등성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와 계획을 설명한다.

7. 특정 생산품 또는 생산품군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그 당사자 조치의 동등성의 인정을 요청받은 당사자의 고려는 그 자체만으로 그 당사자로부터 진행 중인 하나 또는 복수의 해당 생산품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중단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8.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의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조치 집단 또는 체제

단위에서의 조치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그 결정을 수출 당사자에 서면으로 의사소통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조치를 이행한다. 그 결정이 부정적인 경우 그 근거는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공된다.

9. 동등성의 긍정적인 결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경우 상품위원회에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5.6조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 적용

1. 당사자들은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의 개념을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2. 당사자들은 지역적 조건의 인정을 위하여 각 당사자가 따르는 절차에 관한 신뢰를 획득할 목적으로 그러한 인정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3. 수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지역적 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신의 절차 및 계획을 설명한다.

4.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로부터 지역적 조건의 결정을 위한 요청을 받고 수출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가 충분하다고 결정한 경우, 수입 당사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평가를 개시한다.

5. 그러한 평가를 위하여, 요청에 따라 검사, 시험 및 그 밖의 관련 절차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수출 당사자에 의하여 수입 당사자에 부여된다.

6. 수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자는 그 평가의 상태를 수출 당사자에 알린다.

7. 수입 당사자가 수출 당사자의 특정한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그 결정을 수출 당사자에 서면으로 의사소통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조치를 이행한다.

8. 수출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증거의 평가가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결정에 이르지 않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에 그 결정의 근거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9. 지역적 조건을 인정하는 결정에 관련된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경우 상품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제5.7조 위험 분석

1.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하면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상 위험 분석에 대한 그들의 협력을 강화한다.

2.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가. 위험 분석이 문서화되고, 관련 수출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결정될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나. 자신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¹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위험 관리 방안을 고려한다. 그리고

다.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은 위험 관리 방안을 선택한다.

3. 수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자는 특정 위험 분석 요청의 진전 상황 및 그

¹ 나호 및 다호의 목적상, 기술적 및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달성하면서 무역 제한이 현저히 적은 다른 방안이 없는 한, 위험 관리 방안은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연을 수출 당사자에 알린다.

4. 긴급조치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 당사자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검토를 개시한 시점에 다른 당사자의 상품의 수입을 허용한 경우, 그 수입 당사자가 그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당사자도 그 다른 당사자의 그 상품의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다.

제5.8조

감사²

1. 감사를 수행할 때, 각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2. 감사는 체제에 기초하며, 요구되는 보증을 제공하고 수입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를 충족하기 위한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의 규제적 통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된다.³

3. 감사의 개시 전에, 관련된 수입 당사자 및 수출 당사자는 감사의 목적과 범위, 그리고 감사의 개시와 특별히 관련된 그 밖의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4. 수입 당사자는 감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수출 당사자에 제공하고, 결론을 내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러한 모든 의견을 고려한다. 수입 당사자는 자신의 결론을 명시한 보고서 또는 그 요약물 합리적인 기간에 수출 당사자에 서면으로 제공한다. 수입 당사자는 그러한 보고서 또는 요약물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이 필요한 경우 수출 당사자에 알린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이슬람법에 따라 식품 및 식품생산품에 할랄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³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시설이 수입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 수입 당사자가 자신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요건과 동등하다고 결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수입 당사자가 그 시설을 검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5.9조

증명

1. 증명 요건을 적용할 때, 각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2. 수출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의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의 충족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요구되고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공되는 증명서를 포함한 서류가 수입 당사자와 수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영어로 작성되도록 보장한다.⁴ 수입 당사자가 그러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그러한 서류의 요건을 영어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요청에 따라, 수입 당사자는 그러한 요건에 대한 요약 또는 설명을 제공한다.
3. 당사자들은 적절한 경우, 위생 또는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보증이 증명서 외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수입 당사자가 허용할 수 있고, 상이한 체제가 동등한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을 충족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4. 상품 무역에서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그러한 증명 요건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5. 수입 통제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수입 당사자는 수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입 당사자의 규제 요건에 합치되게 발급한 증명서를 수용한다.

제5.10조

수입 검사

1. 수입 검사를 적용할 때, 각 당사자는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정은 당사자들이 영어에 추가하여 다른 언어로 된 증명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그리고 위생 및 식물위생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수입 검사는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위험에 기초한다. 수입 검사에서 비준수가 밝혀지는 경우,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내려지는 최종 결정 또는 그에 의하여 취해지는 조치는 그 비준수 생산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위험에 상응해야 한다.

3. 수입 당사자가 수입 검사 동안 발견된 수출 당사자 상품의 비준수에 기초하여 그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수입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그러한 비준수를 수출 당사자에 통보한다.

4.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수출된 탁송물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비준수가 식별되는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비준수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비준수를 논의한다.

제5.11조 긴급조치

1. 당사자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제5.15조(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이나 당사자들의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관련 수출 당사자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한다.

2. 관련 수출 당사자들은 제1항에서 언급된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당사자에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논의는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개최된다. 그 논의에 참여하는 각 당사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논의를 통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를 적절히 고려한다.

3. 당사자가 긴급조치를 채택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또는 수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다. 수입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수출 당사자는 수입 당사자의 채택된 긴급조치에 대한 검토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수입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수출 당사자에 제공한다. 긴급조치가 검토 후에 유지되는 경우, 수입 당사자는 가장 최근의 이용 가능한 정보에 기초

하여 그 조치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요청에 따라, 긴급조치의 지속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제5.12조

투명성

1. 당사자들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나에 규정된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개발,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3. 이 조를 이행할 때, 당사자들은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의 관련 결정과 국제 표준, 지침 및 권고를 고려한다.
4.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된 조치 또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변경을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온라인 통보 제출 시스템, 제5.15조(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 또는 당사자들의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통보한다.
5. 건강 보호상 시급한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없거나, 그 조치가 무역원활화 성격을 지니지 않는 한, 당사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한 후 다른 당사자들이 서면 의견을 제공하도록 통상적으로 최소 60일의 기간을 허용한다. 당사자는 의견제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다른 당사자의 합리적인 요청을 고려한다.
6. 제5항에 언급된 의견제시 기간의 일부로, 다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하고 실현 가능한 경우, 통보 당사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그 다른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는 과학적 또는 무역적 우려 그리고 대안의 가능성을 고려한다.
7.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요청 후 30일 내에, 제4항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초안의 요건을 기술하는 문서 또는 그 요약물 요청당사자에 영어로

제공한다.

8.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통보한 후, 요청에 따라, 당사자는 채택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요건을 기술하는 문서 또는 그 요약에 관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당사자에 영어로 제공한다.

9.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관련 정보 및 명확화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요청당사자에 제공하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특정 생산품의 수입에 적용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요건

나. 요청당사자의 신청 상태, 그리고

다. 특정 생산품의 수입을 승인하는 절차

10. 수출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물 또는 식물 건강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식품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 제5.15조(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 또는 당사자들의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11. 다음의 경우, 수입 당사자는 제5.15조(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 또는 당사자들의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정보를 관련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가. 수입 당사자에 의하여 식별된 수출된 탁송물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비준수, 또는

나. 수입 당사자에서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당사자의 수출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채택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

12. 수출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중대한 위생 또는 식물 위생 위험과 관련될 수 있는 수출 탁송물이 수출된 것을 확인하는 경우 수입 당사자에 정보를 제공한다.

제5.13조

협력 및 역량 강화

1. 당사자들은 적절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조건으로, 이 장에 합치되게 상호 관심 있는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관한 역량 강화, 기술 지원, 협업 및 정보 교환을 포함하여 당사자들 간 추가 협력을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

2. 둘 이상의 당사자들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제안을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상호 관심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3. 협력 활동을 수행할 때,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자, 지역 또는 다자 작업 프로그램과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4. 당사자들은 상품위원회에서 다른 당사자들과의 협력 활동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5.14조

기술 협의

1. 당사자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다른 당사자와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는 경우, 제5.15조(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따라 지정된 접촉선 또는 이미 설치된 연락채널을 통하여 그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설명에 대한 모든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2. 당사자는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 사안에 관한 모든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자와 기술 협의를 개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요청

당사자는 그러한 협의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협의 당사자들은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당사자가 기술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협의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요청의 접수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일부터 180일 내에 또는 협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기간 내에 그 사안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4. 기술 협의는 원격회의, 화상회의 또는 협의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된 그 밖의 모든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제5.15조

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

1. 각 당사자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내에

가. 이 장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나. 하나 또는 복수의 접촉선의 연락 세부사항에 대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알린다. 그리고

다. 둘 이상의 접촉선이 지정되는 경우, 의사소통해야 할 적절한 접촉선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문의에 응답하기 위하여 중요 접촉선의 역할을 하는 접촉선을 명시한다.

2.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그들의 기능과 책임의 분장에 관한 설명을 접촉선을 통하여 그 밖의 당사자들에 제공한다.

3. 각 당사자는 접촉선에 대한 모든 변경과 권한 있는 당국에서의 구조, 조직 그리고 책임 분장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그 밖의 당사자들에 통보한다. 각 당사자는 이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한다.

4. 당사자들은 이 장의 이행에서 권한 있는 당국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 합의되는 방식으로 서로 협력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그 당사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그러한 협력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상품위원회와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5.16조

이행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경우, 이 장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호 결정된 이해 및 세부사항을 규정할 양자 또는 복수국 간 약정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장에 따라 그러한 협정을 채택한 당사자들은 상호 합의된 경우, 상품위원회에 그러한 약정을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제5.17조

분쟁해결

1. 제19장(분쟁해결)은 이 협정이 발효되는 때 이 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제19장(분쟁해결)의 비적용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째 되는 날에 검토의 대상이 된다. 검토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제19장(분쟁해결)을 이 장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하는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그러한 검토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내에 완료된다. 그 후 준비된 당사자들은 제19장(분쟁해결)을 서로 간 이 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준비가 되지 않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과 협의할 것이고 자신이 유사한 의무를 가지는 어떠한 미래의 자유무역협정 또는 경제협정의 당사자가 될 때 제19장(분쟁해결)을 이 장에 적용할 수 있다.